

# 재단법인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정관

제정 2004.10.05

개정 2005.11.07

개정 2009.03.27

개정 2011.12.13

개정 2015.01.12

개정 2016.03.07

개정 2016.05.18

개정 2016.11.17

개정 2017.06.13

개정 2018.02.09

개정 2018.06.18

개정 2019.01.02

개정 2019.06.18

개정 2020.05.15

개정 2021.04.09.

개정 2024.07.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재양성사업·교육지원사업·평생학습 진흥·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 진흥 사업을 도모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와 시흥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길 11(대야동 332-1,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두되, 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인재양성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4.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정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위임사업
-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사행할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흥시민과 청(소)년 및 교사,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5.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의 폐지로 인한 출연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행정 기관 · 사회단체 · 기업체 · 개인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시흥시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시흥시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고,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이사 14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관 제20조에 의거 보충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취임일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당연직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흥시장
2. 시흥시 교육지원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감사는 시 장학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일부개정 2024.7.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24.7.29.)
3. <삭제>(2024.7.29.)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7.29.)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4.7.29.)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장학사업 업무담당 국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 보고 포함)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4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 또는 자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기 구

**제34조(기구)**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임직원을 둔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고문과 위원회 설치)** 이사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문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 제6장 보 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일부개정 2024.7.29.)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일부개정 2024.7.29.)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시흥시로 한다. 단, 귀속한 재산의 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광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재단 홈페이지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사항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비 고 |
|-----|-----|------------------------------------|-----|-----|
| 이사장 | 조시영 | 시흥시 정왕1동 1292-4(대창공업)              | 4년  |     |
| 이 사 | 이계장 | 시흥시 정왕4동 1878-8 대림4차 1304-602      | 4년  |     |
| 이 사 | 장주환 | 시흥시 은행동 546번지 대우1차 A 102-801       | 4년  |     |
| 이 사 | 이경영 | 시흥시 안현동 72-4                       | 4년  |     |
| 이 사 | 한상국 | 시흥시 거모동566-1                       | 4년  |     |
| 이 사 | 김왕규 | 시흥시 방산동 293-2                      | 4년  |     |
| 이 사 | 이태봉 | 시흥시 장곡동 816-6번지 201호               | 4년  |     |
| 이 사 | 정명신 | 시흥시 신천동 180-11(사무실)                | 2년  |     |
| 이 사 | 배태식 | 시흥시 정왕2동 1256 시화공단 2다101호 (주)대광기계내 | 2년  |     |
| 이 사 | 이만근 | 시흥시 은행동 286-5(회사)                  | 4년  |     |
| 이 사 | 김영태 | 시흥시 신천동 704-2(소래초교)                | 2년  |     |
| 이 사 | 이영미 | 시흥시 대야동 산 138                      | 2년  |     |
| 이 사 | 윤광용 | 시흥시 장현동 527-6 대성빌딩4층               | 2년  |     |
| 이 사 | 박승식 | 시흥시 신천동 184-1(새하늘의 교회)             | 2년  |     |
| 이 사 | 서현범 | 시흥시 군자동 산 22-3번지(영각사내)             | 2년  |     |
| 감 사 | 이건수 | 시흥시 거모동 산29-19 도원빌딩7층              | 2년  |     |
| 감 사 | 김한수 | 시흥시 대야동 567-2우성A 102-1302          | 1년  |     |

발기인 대표 성 명 : 정 종 혼 (인)

주 소 : 시흥시 장현동 시청로20(장현동300번지)

※ 세부명단 : 따로 붙임

## 부 칙 (2020. 5.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재단의 모든 제규정상 “시흥시 교육청 소년재단” 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으로 개정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 현 금   | 1   | 300,000,000원 |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 산 명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 적 | 평 가 액        | 비 고       |
|-------|-------|----|----|-----|--------------|-----------|
| 계     |       |    |    |     | 300,000,000원 |           |
| 현 금   |       |    |    |     | 300,000,000원 | 시흥시<br>출연 |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2019.6.18.개정)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         | 수 량 | 평가액            | 적 요      |
|-----|---------|-----|----------------|----------|
| 합 계 |         | -   | 9,085,173,290원 |          |
| 자산  | 비 유 동 성 | -   | 5,000,000,000원 | 즉시연금형 보험 |
|     | 유 동 성   | -   | 4,085,173,290원 |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산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가액(원)         | 적요 |
|----------|-----------------|----|----|----|----------------|----|
| 합 계      |                 |    |    |    | 9,085,173,290원 |    |
| 즉시연금형 보험 | 삼성생명            |    |    |    | 3,000,000,000원 |    |
| 즉시연금형 보험 | NH농협생명          |    |    |    | 2,000,000,000원 |    |
| 현 금      | 농협은행<br>(시흥시지부) |    |    |    | 4,085,173,290원 |    |